

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청원일자 및 청원인

- 청원일자 : 1999년 12월 29일
- 청 원 인 :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6 주공@ 710-603 황봉길

2. 소개의원

- 최영락 의원(산업경제위원장)

3. 청원의 요지

-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(소방도로)인 청원군 오창면 소재 사유지 (창리 56-4 등 4필지 600평)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비(폐지)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임
 - 상기 소방도로는 20여년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 10여년전 오창면 구 중심지를 우회도로(2차선)가 통과하면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신설과 함께 6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폐지시켜야 할 도시계획시설(소방도로)임
 - 오창면 중심지역에 위치한 토지내의 건물(주유소)이 노후화 된 위험물 저장시설의 개조나 이용객의 편의시설(화장실 등)의 증·개축을 할 수 없어 주변 주민들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불만 가중
 - 또한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내·외국 방문객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하여 미관 저해요인

4. 검토의견

-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

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1조(도시계획의 입안)에 의해 시장·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, 동법 제12조(도시계획의 결정)에 의거 시장·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있음

- 따라서 동 청원의 처리는

도시계획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, 도시계획재정비(변경)는 현지역건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(1994. 12. 9 선고94 누8433 판결)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결정한 바 있어

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